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 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산업피해조사팀장 정승희, 이수경 사무관(02-2110-5564)
덤핑조사팀장 김진선, 신정훈 사무관(02-2110-5573)
불공정무역조사팀장 윤종욱, 신국재 주무관(02-2110-5583)

무역위, 『태국 · 말레이시아産 파티클보드』에 대한 반덤핑 상황변동 재심사 조사개시여부 의견결정

- 국내 가구업체의 반덤핑조치 철회요청에 대해 조사개시하지 않기로,
- 태국 바나차이사의 덤핑률 변경요청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기로

□ **무역위원회**(위원장: 현정택)는'10.11.24일 **제284차 회의**를 개최하여,

① **국내 가구업체들**이 현재 반덤핑 조치중인 **태국 및 말레이시아産 파티클보드**의 **반덤핑관세 철회를 위한 조사를 요청**한데 대해서 **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**하였으며,

② 같은 품목에 대해 **태국 바나차이社**가 **덤핑률 변경**을 위한 조사를 요청한데 대해서도 **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결정**하였음.

③ 아울러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**중국산 해외 브랜드 손목시계를 수입·판매한 (주)원동토탈솔루션**에 대해 **과징금 부과**와 **"원산지 표시명령"**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음.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.

1 국내 가구업체들이 기존 반덤핑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상황변동재심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의견결정

○ 무역위원회는 (사)한국가구산업협회 등 국내 가구단체 및 업체들이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태국 및 말레이시아産 파티클보드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를 위한 상황변동재심을 요청한 데 대해

- 요청인이 반덤핑관세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결정하였음

* 상황변동재심사 : 덤핑방지관세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재심사

○ 이번 결정은 태국·말레이시아産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이후 국내 동종물품 생산업체들이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매출이 신장되는 등 산업피해가 현존하지 않는다며 국내 가구업체들이 기존 조치의 철회를 요청한데 대한 것임

○ 파티클보드(Particle Board)는 각종 폐목재를 미쇄하게 파쇄한 후, 접착제를 가하여 성형·열압한 보드로서 주로 가구제작에 사용되며

- '08.3월 (사)합판보드협회(회원사 : 동화기업, 대성목재공업, 성창기업)가 태국·말레이시아産 파티클보드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여 무역위가 '09.2월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함에 따라 '09.4월부터 7.67%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고 있음.

2 태국 바나차이사가 덤핑률 변경을 요청하는 상황변동재심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의결결정

○ 한편, 무역위원회는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태국의 수출업체 중 하나인 바나차이社가 요청한 덤핑률 변경을 위한 조사개시 여부에 대하여도

- 재심사 개시를 할 만큼 상황이 변동되었다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결정하였음.

○ 요청인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파티클보드 수출가격은 상승한 반면 태국의 내수가격이 하락하는 등 상황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.

○ (삭제)

3 『원산지 미표시 손목시계 수입업체』에 과징금 및 시정조치 의결

○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해외 브랜드 손목시계를 수입·판매한 (주)원동토탈솔루션에 대해

- 약 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'원산지 표시명령' 시정조치를 의결함.

○ 동 업체는 앤디워홀, 인빅타, 펭귄 등 19개 브랜드(총 1,048점)의 중국산 시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였으며

- 이는 "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한 행위"로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됨.

* 적용법률 :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

○ 무역위원회는 향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힘.

* 첨부 1 : 태국· 말레이시아産 파티클보드에 대한 상황변동재심 개요
* 첨부 2 : 손목시계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제재 개요

<참고 1>: 태국· 말레이시아産 파티클보드에 대한 상황변동재심 개요

□ 상황변동 재심사 요청인

○ (사)한국가구산업협회,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, (주)동창, 경성목재(주), (주)서영건재, (주)리바트, (주)퍼시스, (주)한샘, (주)보루네오가구, 장인가구(주)

※ 피요청인 : (사)한국합판보드협회
[회원사 : 동화기업(주), 대성목재공업(주), 성창보드(주)]

□ 상황변동 재심사 요청물품

○ 품명 :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(PB: Particle Board)

* 관세분류번호 : HSK 4410.11.1000 (기본관세율 8%)

○ 정의 :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(Chip)등의 주원료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·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의 수준으로 가공한 보드

○ 용도 : 가구용, 건축용, 포장용 및 기타 목재제품의 제조에 사용

□ 원심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

○ '09. 4. 24. 태국·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덤핑방지관세 부과

○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: '09. 4. 24 ~ '12. 4. 23 (3년)

○ 덤핑방지관세율 : 7.67 %

<참고 2>: 손목시계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제재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피조사인 : (주)원동토탈솔루션

○ 조사대상물품(HS코드) : 팔목시계*(HSK 9102)

* 일반적으로 손목시계로 알려져 있으며, 원산지표시대상물품(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)으로 지정되어 있음

○ 조사대상기간 : 2009. 3. 1(사업개시일) ~ 2010. 7.22

○ 조사개시결정일 : 2010. 7.22

* 사유 : 원산지를 미표시한 중국산 시계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

□ 조사 결과

○ 피조사인이 '09.5월~'10.6월까지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사실 확인

○ 3차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, 앤디워홀, 인빅타, 펭귄, 자끄르망, 헬브로스 등 19개 브랜드 총 1,048점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확인

□ 의결 내용

○ **(과징금 부과)*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, 해당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/100에 해당하는 68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

○ **(시정조치)** 동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, "해당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"를 명함